

2006. 4. 28.(금)

제12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4. 18.                       | 제 천 시 장 |
| 나. 회 부 일 자 : 2006. 4. 19.                          |         |
| 다. 상 정 일 자 : 2006. 4. 26.(제1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         |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이춘호)

####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제2항 등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2조, 제4조)
-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제12조)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 실비기준(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법률시행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지도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32조3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안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조례안에 소위원회가 생략 되었는 바, 소위원회 미구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제7조 위원회의 간사를 계약담당으로 한다고 하므로써 담당 실무자와 계약담당과의 용어해석에 혼선이 우려 됨으로 회계과장 또는 계약 담당주사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구성으로 보아 회계과장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 제 13조(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한금액)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상한금액을 3억원 까지로 한정하여 주민참여공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시설공사 금액의 상한금액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실정에 맞는 상한선을 책정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며,
- 공사감독일수를 주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정한 것은 법령이나 표준안에는 없는 내용으로 본 입법 취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운영 및 관련자에 대하여 수당 등 실비변상은 제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와 예산심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다만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공무원 5급 상당의 여비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한금액을 3억원 까지 한정한 이유는?(최종섭의원)
-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공무원 5급상당의 여비조례을 준용하면 1일 얼마 정도가 되는가?(유경상의원)
- 공사감독일수를 주공사기간의 1/10일 이내로 한 이유는?(윤성열의원)

### 나. 답변요지 (회계과장 이춘호)

-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기초로 했으며 대규모 공사는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상한금액을 정하게 되었음
- 우리시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등 실비기준에 보면 1일 2만원임
-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일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상주 감독자의 경우를 감안 할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견실한 공사시행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판단됨.

## 5. 소수의견

“없 음”

## 6. 토론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